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 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
----------	-----

제출년월일 : 1992. 4. 17

발 의 자 : 손판암의원외5인

1. 제안이유

현행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는 의회개원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타조례등과 일괄제정하여 기존 상위조례인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취지와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본 조례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기에 이의 보완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제명이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이므로

- 자칫 잘못 인식하면 사하구의회에 한해서만 결산검사를 하는 검사위원으로 인식 또는 구의회가 주가 되어 결산검사를 하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실비변상이라는 의의는 운영에 포함되어지고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의 내용에 포함되어지므로 제명을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바꾸었음.

나. 선임방법및 절차에 있어서 현행조례는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임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명료화 하였음.

또한, 위촉장 서식을 별지에 추가하되 검사기간까지 명시토록 하였음. (안 제3조)

다. 감사위원의 자격을 근무처를 정하지 않고 5년 이상 예산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한 5급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직할시 또는 자치구라는 말을 삽입하여 실제 결산검사시 기관의 성격을 잘 파악한후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게끔 보완 하였음. (안 제4조)

라. 책임감사위원을 대표감사위원으로 용어를 바꾸어 위원에 관한 사무처리와 의회등의 출석요구시 대표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추가삽입. (안 제5조 제2항)

마. 감사위원이 검사종료후 구청장에게 의견서 제출시 모든 위원이 서명토록함과 아울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소수의견도 제시하여 전체위원의 검사결과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음. (안 제6조 제2항)

바. 감사위원 출석답변 범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답변도 추가하여 의정활동에 원 활동을 기하도록 하였음. (안 제7조)

사. 실비변상에 있어서

- 감사위원의 일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않아 혼돈을 초래하던 것을 의원 일비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게 명문규정을 두었으며
- 감사기간도 감사개시일로 부터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중의 공휴일과 공무여행기간도 감사기간으로 인정하여 차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제거
- 감사기간종료후 의회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의해 출석답변시는 의원이 아닌 감사위원에게만 일비를 지급토록 제도화 하여 의원의 일비지급과 중복되는 부분을 보완하였음. (안 제8조)

아. 감사위원의 감사자료제출 협조사항을 명문화하여 감사시 자료 미제출로 인한 감사지연을 방지토록 하였음. (안 제9조)

자. 감사위원의 해촉사유에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라고 되어있는 바 이는 위촉대상의 자격이 경력위주로 되어 있기에 이는 추후 상실될 성질이 아니므로 위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임으로 삭제 (제9조 제1항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 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사하구(이하“사하구”라 한다)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운영및 실비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검사위원의 정수) 검사위원의 정수는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을 포함하여 3인이내로 한다.
- 제 3 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회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 4 조 (자격) 의원이외의 검사위원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2.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에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 제 5 조 (대표검사위원) ① 검사위원중 대표검사위원(이하“대표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인 위원이 되며 대표위원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 제 6 조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제출) ① 검사위원은 부산직할시사하구청장(이하“구청

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본회의등에서의 답변) 의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 8 조 (실비변상) ① 감사위원에게는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일반 상당액을 지급하되 실제로 검사개시일로 부터 감사의견서를 제출한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 기간 종료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시는 의원이 아닌 감사위원에게는 제1항에 정한 일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④ 감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검사협조) ① 구청장 및 구 금고의 책임자는 감사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등에 대하여 구청장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조 (감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의장은 감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하구 관할구역에서 타 관할구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한때
2. 감사위원으로 품위를 손상한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직할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때
4.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감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제 11조 (감사위원의 제재) 감사위원이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5년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위 축 장

○ ○ ○

부산직할시 사하구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년 ○월 ○일

부산직할시 사하구 의회 의장 (인)